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549호 2016. 1. 7(목)

고 시

제2015 - 11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 1

공 고

제2015 - 991호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
제2015 - 1009호 남해 서대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 7
제2015 - 1012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및 어업권 소멸 공고 ····· 10
제2016 - 1호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공고 ····· 12

알 림

보건소 공고 제2015 - 26호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13

회 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6, 행정 3046)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5 - 11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남 해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피허가자		허 가 번 호	면 적 (㎡)	점용장소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78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장	2011-1	50,000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산209-2번지선	새고막과 피조개혼합 양식시험사업	2011.1.19 2015.12.31	**2016.1.1 2020.12.31**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78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장	2011-2	10,000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235-18번지선	개체굴산업화 시험사업	2011.1.19 2015.12.31	**2016.1.1 2020.12.31**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5 - 991호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남해군 전통문화 발전과 유적의 보존·관리 및 군민이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용어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조례의 제정 목적, 전통문화·전통사찰·사우·서불과차·고려대장경 판각지 용어의 정의 설명 및 전통문화의 적용범위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권장사항에 관한 내용

다.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전통문화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항(안 제6조)

- 전통문화 유적 및 관리시설의 안전보호 및 화재예방 조치와 그 밖에 전통문화 유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지도· 감독 및 준용(안 제7조)

바. 시행규칙(안 제8조)

4. 제정안 : 붙임과 같음

5. 예고기간 : 2015년 12월 23일 ~ 2016년 1월 12일

6.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2) 문의처 : 전화 055-860-8633, 팩스 055-860-3748,
전자우편 kimjr25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활용가능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 란 남해군에 있는 전통사찰, 사우, 서불과차, 고려대장경 등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유적·유물· 문화예술 양식 등을 말한다.
2. "전통사찰"이란「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3. "사우" 란 군내에 소재한 향토유적으로 선현 및 향토 유학자 등을 모시고 전통제향을 올리는 사당을 말한다.
4. "서불과차" 란 세계적으로 독특한 문화유산인 남해양아리 석각 유적을 말한다.
5. "고려대장경 판각지" 란 고려대장경 판각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및 발굴 조사된 유적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통문화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우 : 남해충렬사, 남해향교, 난곡사, 운곡사, 무민사, 율곡사, 녹동사
2. 전통사찰 : 용문사, 화방사, 보리암, 운대암, 법흥사, 망운사
3. 전통문화 및 전승 제례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물 또는 향토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
4. 서불과차 관련 유적 보존 등 관련 행사
5. 고려대장경 판각지 및 관련 유적 개발 보존 등 각종 행사

제4조(책무) 군수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의 매수, 취득, 보수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승 제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통문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전승제례, 각종 행사, 교육 사업
2. 국제교류 심포지엄 등 각종 행사
3. 전통문화 유적의 관리・보호・수리

4. 그 밖에 지역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유적 사용 등) ① 군수는 전통문화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적을 군민에게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통문화 유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유적의 역사성과 존엄성 유지
2. 전통문화 유적 및 관리시설의 안전보호 및 화재예방 조치
3. 관람객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4.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5. 그 밖에 전통문화 유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5 - 1009호

남해 서대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남해 서대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신청 “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남해 서대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산 112번지외 12필지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사업시행자 : 서대지구 신규마을 마을정비조합
  ○ 주요 사업내용 : 신규마을(26가구) 조성사업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5. 12. 31 ~ 2016. 1. 18
  ○ 공람장소 :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 창선면사무소
  ○ 정보통신망 : 남해군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6. 1. 8(금요일) 14:00
  ○ 개최장소 : 남해군 서대마을회관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 제 출 처 : 공람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 된 주민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055-860-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업명	남해 서대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산 112번지외 12필지	
사업자	서대지구 신규마을 마을정비조합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남해군 공고 제2015 - 1012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및 어업권 소멸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처분 사항 및 소멸 어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처분 년월일	비고
						주 소	성 명		
마을어업 제263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면 대벽지선	300,000	2015.12.27 ~ 2025.12.26	남해군 창선면	대벽어촌계	2015.12.24	재개발
마을어업 제264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면 단항지선	531,000	2015.12.27 ~ 2025.12.26	남해군 창선면	단항어촌계	2015.12.24	재개발
마을어업 제265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이동면 초음지선	1,200,000	2015.12.29 ~ 2025.12.28	남해군 이동면	광두어촌계	2015.12.24	재개발
마을어업 제266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남해읍 입현지선	1,084,000	2015.12.29 ~ 2025.12.28	남해군 남해읍	토섬어촌계	2015.12.24	재개발
마을어업 제267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이동면 초양지선	701,000	2015.12.29 ~ 2025.12.28	남해군 이동면	초양어촌계	2015.12.24	재개발
마을어업 제268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이동면 다천지선	205,000	2015.12.29 ~ 2025.12.28	남해군 이동면	다천어촌계	2015.12.24	재개발
마을어업 제269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이동면 고모지선	617,000	2015.12.29 ~ 2025.12.28	남해군 이동면	고모어촌계	2015.12.24	재개발

○ 소멸 어업권 현황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마을어업 제121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면 대벽지선	480,000	2005.12.27 ~ 2015.12.26	남해군 창선면	대벽어촌계	면허기간 만료
마을어업 제122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면 단항지선	793,000	2005.12.27 ~ 2015.12.26	남해군 창선면	단항어촌계	면허기간 만료
마을어업 제123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이동면 초음지선	1,200,000	2005.12.29 ~ 2015.12.28	남해군 이동면	광두어촌계	면허기간 만료
마을어업 제124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남해읍 입현지선	1,084,000	2005.12.29 ~ 2015.12.28	남해군 남해읍	토섬어촌계	면허기간 만료
마을어업 제125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이동면 초음지선	701,000	2005.12.29 ~ 2015.12.28	남해군 이동면	초양어촌계	면허기간 만료
마을어업 제156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이동면 다천지선	205,000	2005.12.29 ~ 2015.12.28	남해군 이동면	다천어촌계	면허기간 만료
마을어업 제158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이동면 고모지선	617,000	2005.12.29 ~ 2015.12.28	남해군 이동면	고모어촌계	면허기간 만료

남해군 공고 제2016 - 1호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공고

남해군 평리지구 휴먼시아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변경사항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남 해 군 수

1. 임대주택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20
2. 임대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135671-0＊＊＊＊＊＊)
   대표자 : 소 병 로
3. 세대수 : 353세대
4. 임대조건 변경내역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표준 임대 조건				전환 임대 조건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조건	33.61 / 33.72	116 / 90	7,138,000	60,400	7,487,000	63,350	7,487,000	63,350
			7,851,000	66,440	8,235,000	69,680	8,235,000	69,680
			8,565,000	72,480	8,984,000	76,020	8,984,000	76,020
			9,993,000	84,560	10,481,000	88,690	10,481,000	88,690
	46.8	57	13,179,000	93,350	13,824,000	97,920	16,824,000	82,920
			14,496,000	102,680	15,206,000	107,710	18,206,000	92,710
			15,814,000	112,020	16,588,000	117,500	19,588,000	102,500
			18,450,000	130,690	19,353,000	137,080	22,353,000	122,080
	51.93	90	17,572,000	115,320	18,433,000	120,970	24,433,000	90,970
			19,329,000	126,850	20,276,000	133,060	26,276,000	103,060
			21,086,000	138,380	22,119,000	145,160	28,119,000	115,160
			24,600,000	161,440	25,806,000	169,350	31,806,000	139,350
	합계	353						
	임대차계약기간		2014.02.01 ~ 2016.01.31		2016.02.01 ~ 2018.01.31			

알 림

남해군보건소 공고 제2015 - 26호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보건법」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에 따라위반 횟수별 과태료 차등 부과(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668-801,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6 남해군보건소
○ 연락처 : 전화 055-860-8769
팩스 860-8799
e-mail: mrrjrj4830@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34조 2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